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106637 손해배상(지)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계¹⁾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이진화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승헌
변 론 종 결 2026. 6. 5.
판 결 선 고 2026. 7. 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8.부터 2026. 7. 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사임하였고, 법무법인 라운(담당변호사 정범석)이 새로이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품설계, 시스템 모니터링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D' (변경 전 컴퓨터프로그램명: E,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화장품용기 제조 및 판매업, 사출성형 및 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 C은 2021. 3. 8.경 피고 회사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였다.

다. 피고 C과 피고 회사는 2024. 11. 8. 아래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24고약11820호)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3. 8.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A'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3D 설계 프로그램 'D 프로그램'을 복제한 후 컴퓨터에 설치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피고 회사 사무실 내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였으므로²⁾, 피고 C은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C이 위 불법행위로서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공동하여³⁾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2)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복제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구하고, 복제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제 업무상 사용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지 않으므로 복제일에 발생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3) 원고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명하는 것이 처분권주의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회사는 피고 C이 대표자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인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 모듈의 사용료 중 일부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적용 여부

1)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6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구성과 기능을 갖춘 여러 개의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용료도 개개의 모듈별로 또는 수개의 모듈이 합쳐진 패키지별로 책정되어 있다.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은 상당한 고가로서 실제로 원고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지는 모듈만을 라이선스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고 그 사용료 역시 각 모듈별로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업무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하였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를 구매하지 않고 업무에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프로그램이 실제 고객에게 판매될 때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별 구매 수량, 범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정품 가격에서 할인율이 적용되어 그 사용료 가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개별 모듈 사용료 가격의 단순 합산액이 곧바로 피고들이 그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저작권법 제126조의 손해액 산정

1)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과 이 사건의 경위, 개별 모듈의 구성 및 가격, 이 사건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9,000,000원으로 정한다.



① 피고 C이 불법복제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전체 모듈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 C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듈 전부를 업무에 사용하고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②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대체로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면 오래된 버전의 사용료가 하락하게 되는데, 피고 C이 복제·사용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최신 버전이 아니었다.

③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본 모듈 패키지는 'D Parametric Essentials'이고, 2024년경 해당 패키지의 정가는 14,261,000원 또는 8,196,000원(Node-Locked 버전)이다. 피고들은 2024. 6.경 이 사건 프로그램을 주로 판매하는 소외 'F'라는 업체에서 'D Design Essentials'라는 패키지에 대하여 5,906,100원의 견적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통 업체가 업체의 수요나 시장 상황 등 여러 이유로 프로그램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일회성 견적가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가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피고들의 불법행위 기간과 손해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라는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과 피고들의 업무 관련 정도나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생성한 파일 등 구체적인 손해액을 추정할 만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3. 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